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
공 시 최 고

사 건 2006카공 30 공시최고
신청인 이성덕
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동
414－2 신성농약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 기일인 2006. 11. 20. 14: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2006년 8월 8일

판사 노태헌

〈증서의 표시〉

종 류: 자기앞수표
번 호: 가가 03992256～가가 03992260
액 면: 각금 100,000원 5매
발행일: 2006. 07. 13
발행인: 합천 중부농협